

『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1월 3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일·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임신한 공무원의 장거리·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8조제4항)
-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승인 (안 제23조제1항)
- 만 4세 미만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 휴가 규정(안 제23조제9항)

-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교행사 또는 교사 상담시 연간 2일의 휴가 규정(안 제23조제10항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 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·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제2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만 4세 이하(매년 1월 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「영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